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33
----------	-----

제출연월일 : 2007. 10. 29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본청내 실·국간 일부 기능조정 및 사업소별 기능강화 또는 기능축소에 따른 업무량 증감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자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고, 직종·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13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098명으로 하며,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973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63명으로 함(안 제2조).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중 본청의 정원을 1,09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63명으로 하며, 사업소의 정원을 910명으로 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협의 : 관련부서 협의완료

다. 기 타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2) 입법예고 : 2007. 10. 12. ~ 10. 22. / 접수의견 6건(반영 3건, 미반영 2건, '08년반영 1건)

라. 참고자료

(1) 정원조정 : 3,123명 → 3,134명(11명 증원)

－ 시본청 : 10명(5급 4명, 6급 9명, 7급 △5명, 8급 1명, 기능10급 1명)

－ 의회사무처 : 1명(6급)

－ 사업소 : 증원없음(6급 2명, 7급 5명, 8급 △4명, 별정7급 1명, 별정8급 △1명, 연구사 △1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1명)

(2) 주요증감내역 : 11명 증원

－ 시내버스개선추진인력, 의회 입법지원인력 등 인력조정 : 17명 증원

－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수탁에 따른 전담인력 증원 : 10명(건설관리본부)

－ 지하철건설본부 → 도시철도기획단으로 기능축소에 따른 감축 : △16명

정원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접수 및 검토결과

제출자(부서)	의견접수 내용	검토결과
의회사무처	○ 공무원교육원장 복수직 정원책정 -지방부이사관 → 지방부이사관· 별정3급상당으로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조제3항 및 별표3 제2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직급기준에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으로 보하도록 규정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장의 복수직 (지방부이사관·별정3급상당) 책정은 불가능 “미반영” ※일반직·별정직 복수는 별정직으로 봄 (동규정 시행규칙 별표5 제5호)
	○ 의회사무처 입법정책실 교육분야 입법지원 인력 확충 -6급<계약직 “나”급> 1명	○ 시의회 입법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반영”
시립미술관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정원 직종 변경(1명) -학예연구사 → 7급(계약직)	○ 미술관 특성상 상황에 따라 학예 연구분야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필요 -효율적 인력운용 위해 7급 정원 책정후 계약직 채용 활용 “반영”
상수도 사업본부	○ 유성사업소 별정8급을 별정7급 으로 정원조정 책정(1명) -신흥개발지역으로 업무량 급증	○ 타 지역사업소와의 형평 및 업무량 증가를 감안하여 “반영” -별정8급 감축, 별정7급 신규 책정
보건위생과	○ 식품산업육성담당 신설 및 인력 증원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수입식품 사무 지방이양으로 업무량 증가 -향토식품 개발 및 외식산업 육성	○ 「보건위생과」는 6담당31명으로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담당 및 인력이 적지 않으므로 “미반영” -향후 업무량 증가 추이를 분석 하여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타당 ※부산 7담당43명, 대구 6담당35명, 인천 6담당36명, 광주 5담당24명, 울산 5담당27명
푸른도시 사업단	○ 담당 신설 및 인력증원 -푸른도시 관리인력 필요	○ 향후 업무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8년 상반기에 적정 인력 보강

정원증원에 따른 비용소요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 : 11명(5급 4명, 6급 12명, 7급 1명, 8급 △4명, 연구사 △1명, 기능9급 △1명)

3. 비용소요 내역

구 분	소요비용(천원)	산 출 기 초
합 계	705,541	
⊙ 인건비 소계	595,477	
본 봉	348,569	본봉×12월
정 근 수 당	29,874	본봉×50%×2회
정근수당가산금	6,840	기준액×12월
시간외근무수당	60,157	기준액×45시간×12월(5급이하)
가족수당	6,996	배우자 : 30,000원×0.78×12월 기 타 : 20,000원×1.48×12월
자녀학비보조수당	5,007	중학생 : 49,650원×0.2×4회 고교생 : 398,100원×0.16×4회
정액급식비	17,160	130,000원×12월
교통보조비 등	18,240	기준액×12월
명절휴가비	34,857	본봉×60%×2회
가계지원비	58,095	본봉×16.7%×12회
연가보상비	9,682	본봉×10/30
⊙ 물건비 소계	34,44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기준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기준액×12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기준액×정원
직책급업무추진비	-	기준액×12월
직급보조비	27,840	기준액×12월
대민활동비(특정업무비)	6,600	50,000원×12월(기준액×12월)
⊙ 이전경비 소계	75,624	
성과상여금	28,135	본봉×100%(평균)
건강보험부담금	14,740	총보수×2.24%
연금부담금	32,749	보수월액×8.5%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중 “3,123명”을 “3,134명”로 하고, 같은 조제1호중 “2,088명”을 “2,098명”으로 하며, 제3호중 “62명”을 “63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3451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 부칙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조례 제3512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 제2항중 “경제과학국의 IAC추진기획단 정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2명)”을 “경제통상국 IAC지원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조정되는 정원중 경제통상국 WTA지원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및 교통건설국 시내버스개선추진인력 9명(5급 3명, 6급 4명, 7급 2명)의 존속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단위 : 명)

직종, 직급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총 계		3,134	1,095	63	1,066	910
정무직 (시장)		1	1			
일반직	소 계	1,484	858	35	40	551
	2~3급	1		1		
	3급	12	8		1	3
	3~4급	1	1			
	4급	69	44	3	4	18
	5급	238	181	3	12	42
	6급	497	340	17	12	128
	7급	489	242	11	11	225
	8급	177	42			135
소방직	소 계	973	62	0	911	0
	소방정	8	3		5	
	소방령	27	12		15	
	소방경	57	7		50	
	소방위	61	7		54	
	소방장	141	14		127	
	소방교	281	18		263	
	소방사	398	1		397	
지도직	소 계	33	0	0	33	0
	지도관	2			2	
	지도사	31			31	
연구직	소 계	81	3	0	57	21
	연구관	14			12	2
	연구사	67	3		45	19
별정직	소 계	43	19	9	0	15
	1급상당	1	1			
	4급상당	6	1	4		1
	5급상당	7	3	3		1
	6급상당	9	6			3
	7급상당	15	5	2		8
	8급상당	5	3			2
기능직	소 계	519	152	19	25	323
	6급	25	11			14
	7급	56	18	3	3	32
	8급	94	25	6	3	60
	9급	159	29	4	11	115
	10급	185	69	6	8	102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총수는 <u>3,123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2,088명</u></p> <p>2. (생략)</p> <p>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62명</u> 부칙(조례 제3451호)</p> <p>제2조 (생략)</p> <p>① ~ ③ (생략)</p> <p>④ <u>예산담당관 사업별 예산제도 추진 정원 2명 (행정6급 1, 전산7급 1)의 존속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⑤ ~ ⑥ (생략) 부칙(조례 제3512호)</p> <p>②(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중 자치행정과 과거사진상규명담당인력 1명(8급)의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u>경제과학국의 IAC추진기획단 정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2명) 및 문화체육국 전국체전 기획단 정원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2명, 기능8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u></p>	<p>제2조(정원의 총수) ----- -----<u>3,134명</u>----- -----</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2,098명</u></p> <p>2. (현행과 같음)</p> <p>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63명</u> 부칙(조례 제3451호)</p> <p>제2조 (현행과 같음)</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⑤ ~ ⑥ (현행과 같음) 부칙(조례 제3512호)</p> <p>②(한시정원) ----- ----- -----<u>경제통상국의 IAC지원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u>----- ----- -----</p>

현						개 정 안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단위:명)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단위:명)						
기관별 직종, 직급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 관	사업소	기관별 직종, 직급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 관	사업소	
총 계	3,123	1,085	62	1,066	910	총 계	3,134	1,095	63	1,066	910	
정무직(시장)	1	1				정무직(시장)	1	1				
일반직	소계	1,471	849	34	40	548	소계	1,484	858	35	40	551
	2~3급	1		1			2~3급	1		1		
	3급	12	8		1	3	3급	12	8		1	3
	3~4급	1	1				3~4급	1	1			
	4급	69	44	3	4	18	4급	69	44	3	4	18
	5급	234	177	3	12	42	5급	238	181	3	12	42
	6급	485	331	16	12	126	6급	497	340	17	12	128
	7급	489	247	11	11	220	7급	489	242	11	11	225
	8급	180	41			139	8급	177	42			135
소방직	소계	973	62	0	911	0	소계	973	62	0	911	0
	소방정	8	3		5		소방정	8	3		5	
	소방령	27	12		15		소방령	27	12		15	
	소방경	57	7		50		소방경	57	7		50	
	소방위	61	7		54		소방위	61	7		54	
	소방장	141	14		127		소방장	141	14		127	
	소방교	281	18		263		소방교	281	18		263	
	소방사	398	1		397		소방사	398	1		397	
지도직	소계	33	0	0	33	0	소계	33	0	0	33	0
	지도관	2			2		지도관	2			2	
	지도사	31			31		지도사	31			31	
연구직	소계	82	3	0	57	22	소계	81	3	0	57	21
	연구관	14			12	2	연구관	14			12	2
	연구사	68	3		45	20	연구사	67	3		45	19
별정직	소계	43	19	9	0	15	소계	43	19	9	0	15
	1급상당	1	1				1급상당	1	1			
	4급상당	6	1	4		1	4급상당	6	1	4		1
	5급상당	7	3	3		1	5급상당	7	3	3		1
	6급상당	9	6			3	6급상당	9	6			3
	7급상당	14	5	2		7	7급상당	15	5	2		8
	8급상당	6	3			3	8급상당	5	3			2
기능직	소계	520	151	19	25	325	소계	519	152	19	25	323
	6급	25	11			14	6급	25	11			14
	7급	56	18	3	3	32	7급	56	18	3	3	32
	8급	94	25	6	3	60	8급	94	25	6	3	60
	9급	160	29	4	11	116	9급	159	29	4	11	115
	10급	185	68	6	8	103	10급	185	69	6	8	10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년 11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0월 29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7년 10월 30일
3. 상 정 일 자 :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11. 23)
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기획관 권혁돈)

1. 제안이유

본청 내 실·국간 일부 기능조정 및 사업소별 기능 강화 또는 기능 축소에 따른 업무량 증감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자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고, 직종·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3,13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098명으로 하며,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973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63명으로 함(안 제2조).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본청의 정원을 1,09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63명으로 하며, 사업소의 정원을 910명으로 함(안 별표).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이희배)

○ 본 개정조례 안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중 일부사업의 수탁 등에 따라 건설관리본부의 정원을 보강하고,

지하철건설본부의 도시철도 1호선 전 구간 개통에 따른 정원 감축 등 기능 쇠퇴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여 신규업무 발생 등 필요 분야의 인력으로 대체 조정 하였으며,

기능 확대 및 축소에 따라 한밭도서관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하천관리사업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하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직급을 3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 본 조례 안 검토 결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행하는 행정기구의 조정에 따라 정밀한 업무분석을 통해 탄력적으로 인력을 보강하거나 재배치하는 등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다만, 중앙부처와의 비교시 지방 5급이상 상위직급 분포비율의 점진적인 불균형 해소, 인사적체 해소 등 직원들의 사기양양, 책임행정 구현 등을 위해 직급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IV. 토 론 요 지 : 생 략

V. 질의답변요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